

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. 6. 11 선고 2018가단5276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등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피 고 1. C 주식회사

2. 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D

3. 주식회사 E

소송대리인 F

변론 종결 2019. 5. 14.

판결 선고 2019. 6. 11.

주 문

1. 원고들에게,

가. 피고 C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/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0. 10. 20. 접수 제6091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
나. 피고 신용보증기금, 주식회사 E은 위 가.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.
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들이 각 1/2 지분씩 공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10. 10. 20. 채권최고액 80,000,000원, 채무자 G, 근저당권자주식회사 H인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'라 한다)가 마쳐졌고, 이후 2013. 7. 10. I 명의로 2013. 6. 27.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.

나.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3. 10. 30. J 명의로 2013. 10. 18.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, J의 신청에 따라 2013. 12. 11.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K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.

다.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카단53509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2017. 1. 19.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 등기가 마쳐졌고, 피고 주식회사 E(이하 'E'이라 한다)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38143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2017. 8. 25.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.

라.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8. 7. 3. 피고 C 주식회사(이하 'C'라 한다) 명의 로 2018. 4. 27.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.

마. 원고들은 2018. 7. 13. 채권자 불확지 및 위 다.항 기재 각 가압류경합을 이유로 J 또는 피고 C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80,000,000원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년 금제725호로 혼합공탁하였고, 2018. 11. 8. J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임의경매절차의 집행비용 2,316,200원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년 금제1498호로

변제공탁하였다.

[인정근거] 피고 C : 자백간주(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) 피고 신용보증기금, E : 갑 제1 내지 3호증(가지 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민법 제487조 후단의 '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'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, 채권양도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당초의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채무자로서는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, 따라서 민법 제487조 후단에 의하여 변제공탁할 수 있다(대법원 1998. 4. 26. 선고 96다2583 판결 참조). 한편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사유가 생기고, 그 채권양도 통지 후에 그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고, 이러한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,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(대법원 2008. 1. 17. 선고 2006다56015 판결 참조).

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J가 원고들에게 채권양도에 관하여 통지를 하였다거나 원고들이 채권양도에 관하여 승낙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, 원고들이 진정한 채권자가 채권양도인 J인지 채권양수인 피고 C인지를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, 원고들이 한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및 집행공탁은 유효하다.

따라서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인 원고들은 피담보채권의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하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(대법원 1974. 12. 10. 선고 74다998 판결 참조), 이 사건 근저당권의 양수인인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,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가압류권자인 피고

신용보증기금, E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들에게 이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.

판사 전서영

별 지

부동산 목록

1. 경상북도 구미시
대 1172㎡

2. 위 지상
동호
경량철골구조 기타 지붕 및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
제 1종근린생활시설(제조업소) 244.8㎡

3. 위 지상
동호
경량철골구조 기타 지붕 및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
제 1종근린생활시설(제조업소) 244.8㎡

이 상

